

예 산 총 칙

201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1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443,691,579	13,310,747
일반회계	441,576,128	13,247,284
특별회계	2,115,451	63,464
기타특별회계	2,115,451	63,464
지하수특별회계	349,630	10,489
의료급여기금기타특별회계	1,344,101	40,323
관광지조성사업보상기타특별회계	120,279	3,608
기반시설기타특별회계	301,441	9,043

제 2 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,663,578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 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총액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